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11

발의연월일 : 2021. 11. 3.

발 의 자:김원이ㆍ기동민ㆍ김경협

김성주 · 박상혁 · 양향자

우워식 • 위성곤 • 이해식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여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 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보조를 명시함으로써 무연고 시신의 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2조의2).

법률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일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①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	
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	
신에 대해서는 <u>일정</u> 기간 매장	조례로 정하는 바에
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
	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
	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
	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overline{\text{M1항}}$ 에 따라 무	<u>④</u> <u>제1항 및 제2항</u>
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6조(비용의 보조) ①·② (생략)

<신 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6조(비용의 보조)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 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